

『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강승수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,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)에 대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
- 보훈예우수당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.

4. 참고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,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먼저, 안 제8조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는 수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0조는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를, 안 제11조는 수당 지급의 중지를, 안 제12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3조는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,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